

제 795 호
1980. 8.26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정 상 천
편집: 문화공보관 박 용 우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1452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자징수조례중개정조례 ... 3
- 제 1453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조례
중개정조례..... 6
- 제 1454 호: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 제 1455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 9
- 제 1456 호: 서울특별시립종합운동장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0

◎ 규 칙

- 제 1870 호: 서울특별시지방간담직원규칙중개정규칙 11
- 제 1871 호: 서울특별시외구사무관장규칙중개정규칙 16
- 제 1872 호: 서울특별시립종합운동장건설본부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
칙 18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맑아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교 시

제 29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8
제 300 호 :	담수어 판매 장소 지정.....	20
제 30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효.....	20
제 30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지적 승인.....	21
제 304 호 :	쇠고기, 돼지고기, 연동가적 및 돼지고기 기준 연 동 표 고 시.....	22
제 305 호 :	비료 생산업 허가.....	22
제 30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23
제 30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24
제 308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25
제 309 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 2 호선 일부역 간 영업 거리 표 중 역 명 일부 개정 고시.....	26

◎ 공 고

제 264 호 :	잠실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일부 변경 및 환지 계획 변경 공람 공고	28
제 266 호 :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취 소 공 고	29
제 268 호 :	특정 열 사용기 자재 시공 업체 지정 취소	29
제 26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 고.....	30
제 271 호 :	열 사용기 자재 제조 업체 행정 처분.....	30
제 274 호 :	환지 계획 변경 인가 및 환차 예 정 처 지 정 공 고.....	31
제 275 호 :	청지천 7 가구역 제 7, 8 지구 재 개발 사업 완료 공 고	31
제 281 호 (강남구 공 고) :	공인 개 각 사용 공 고	32
제 36 호 (강동구 공 고) :	공인 개 각 사용 승인 공 고	33

조 제

각부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청사 10
1980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1452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
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실내수영장의 경우에는 상시 이

용자를 위한 회원을 모집하여 정가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 9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입장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사용
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위험물이나 다른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기타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중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종합운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안** **습** **사** **용** **료**

운 동 장 별		기 준	요 금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개인: 1인×2시간	2,000 원
		단체: 1인×2시간	1,400 원
	실내수영장	개인: 대 인	900 원
		: 소 인	700 원
		단체: 대 인	700 원
		: 소 인	600 원
	회원: 대 인	(월) 10,000 원	
	: 소 인	(월) 8,000 원	

운 동 장 별		체 육 경 기	체육이외행사
장 총 체 육 관		22,000	108,000
서울 운동장	육 상 장	48,000	144,000
	야 구 장	22,000	144,000
	정 구 장	3,000	52,000
	배 구 장	6,000	34,000
	수 영 장	55,000	58,000
	아동수영장	12,500	22,000
	스케이프장	43,000	
	마 술 장	6,000	
호남 운동장	육 상 장	18,000	116,000
	정 구 장	9,000	52,000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일, 공휴일 주간사용료: 평일외 3 할가산 ○ 야간사용료: 해당 주간사용료의 2 할가산 (단, 실내체육관은 3 할가산,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은 113 의 3 할가산) ○ 초과사용료: 주간에는 주간사용료의 1 할가산 야간에는 야간사용료의 2.5 할가산 (초과사용기간이 30 분초과 1 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 봄) ○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동절기 사용료 기본사용료의 5 할가산 (동절기: 11월 - 익년 4월) ○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다이빙장 사용료 기본사용료의 3 할가산 ○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용료 1실당 본경기장 기본사용료의 2.5 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충청, 구청, 공무원 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 1980년 8월 26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453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지방공무원조배증개정조배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배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가 일반회계"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이 조배는 부 칙 이 조배는 1980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2 급을류	3	행정직 2, 행정 및 시설직 1
3 급갑류	2	행정직 2
3 급을류	196	행정직 132, 행정및기계직 1, 행정및전기직 1, 행정및화공직 2, 행정및수산직 1, 행정및토목직 3, 행정토목및건축직 1, 행정및지적직 1, 기계및전기직 3, 전기직 1, 화공직 1, 화공및보전직 2, 화공및토목직 1, 화공및건축직 1, 농림직 3, 농림및토목직 1, 농림및건축직 1, 축산직 1, 축산및수외직 1, 의무및약무직 1, 의무및간호직 1, 보전직 1, 토목직 15, 토목및건축직 7, 토목및지적직 2, 건축직 8, 지적직 2, 통신직 1
4 급갑류	366	행정직 228, 기계및전기직 28, 섬유직 1, 화공및보전직 13, 농림직, 축산및수외직 14, 약무직 2, 간호직 1, 수산직 1, 토목및건축직 68, 지적직 7, 통신및전송직 3
4 급을류	477	행정직 286, 기계및전기직 29, 화공및보전직 10, 농림, 축산및수외직 10, 약무직 4, 간호직 2, 수산직 1, 토목및건축직 123, 지적직 10, 통신및전송직 2
5 급갑류	25	행정직 15, 토목및건축직 7, 지적직 2, 통신직 1
5 급을류	5	행정직 4, 건축직 1
고 용 원	449	타자원 82, 필생 1, 제도사 5, 목공 2, 수어장 1, 수위 25, 난방공 1, 운전원 140, 민원보조원 12, 전화교환원 15, 수리공 2, 전공 14, 통신원 3, 사진사 8, 기계공 6, 사육원 1, 대장정리원 69, 의무원 1, 경비원 9, 감시원 11, 교도원 3, 청부 31, 전달부 1, 매표원 1, 주차감시원 2, 직공 3

직 급	정원	정 원 내 용
별 정 직	9	2 급울류상당 1, 3 급갑류상당 1, 3 급을류상당 5, 4 급갑류상당 2
소 방 직	67	소방정감 1, 소방감 3, 소방정 10, 소방령 10, 소방위 10, 소방정 11, 소방교 13, 소방사 18
계	1,599	

(별표 2)

서울특별시구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반회계

직 급 별	정원	정 원 내 용
3 급갑류	60	행정직 34, 행정및토목직 9, 행정, 토목및건축직 17
3 급을류	296	행정직 236, 행정및토목직 17, 행정, 화공및보건직 5, 행정및농림직 13, 토목직 8, 건축직 17
4 급갑류	869	행정직 681, 행정, 화공및보건직 23, 농림직 31, 축산직 2, 보건직 19, 토목및건축직 88, 지적직 25
4 급을류	1,095	행정직 783, 기계및전기직 16, 화공직 12, 농림직 34, 축산및수의직 10, 보건직 35, 토목및건축직 177, 지적직 28
5 급갑류	1,552	행정직 1,170, 기계및전기직 25, 화공직 21, 농림직 45, 축산및수의직 8, 보건직 34, 간호직 1, 토목및건축직 190, 지적직 60
5 급을류	1,534	행정직 1,198, 기계및전기직 11, 화공직 1, 농림직 18, 축산및수의직 7, 보건직 21, 토목및건축직 211, 지적직 67
기 능 직 교 용 원	6 1,399	10 등급 : 철근수 6 타자원 158, 제도사 2, 수위장 14, 수위 11, 운전원 233, 민원보조원 34, 전화교환원 51, 전공 80, 사진사 3, 기계공 25, 감시원 202, 청부 72, 선동부 17, 수로원 17, 노인정 관리인 10, 주차감시원 228, 매점원 129, 대장정리원 51, 외부원 13, 원정 35, 경비원 6
계	6,813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
1980년 8월 2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454 호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동조직) 1 동사무소에 동장, 사무장 및 민원주임을 두고, 동장은

3 급을류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무장은 지방행정주사, 민원주임은 지방행정주사보로 보한다.

② 동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장은 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동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원주임은 사무장의 지휘하에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정원	정원내용
3 급 을 류	417	행정직 30, 별정직 387
4 급 갑 류	417	행정직 417
4 급 을 류	417	행정직 417
5 급 갑 류	2,696	행정직 2,688, 농림직 8
5 급 을 류	2,843	행정직 2,444, 농림직 17, 토목직 382
고 용 원	1,251	전달부 417, 민원보조원 834
합 계	8,041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

1980년 8월 26일

<p>○서울특별시조례 제 1455 호</p> <p>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립 근로자후생시설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무 칙</p> <p>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정원중 고봉원 6명 (난방공 1, 수위 1, 청부 1, 목공 1, 이용사 2)은 현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6월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별표 1) 근로자후생시설</p>				
직영시설		위탁시설		
서울특별시 근로자회관		서울특별시 남부근로복지관		
서울특별시 부녀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산 · · 중구 · · 동대문 · · 동탄 · 		
<p>(별표 2) 지방공무원 정원표</p>				
직급별	근로자회관		부녀사회관	
	정원	내 용	정원	내 용
3급을류			1	행정직 1
4급갑류	1	행정직 1	2	행정직 2
4급을류	1	행정직 1	2	행정직 2
5급갑류			2	행정직 2
5급을류	2	행정직 2		
고봉원	6	난방공 1, 청부 1, 수위 1, 목공 1, 이용사 2	35	전공 1, 난방공 1, 수 위 1, 청부 3, 교도원 21, 취사원 3, 전달부 1, 민원보조원 1, 상담 원 2, 타자원 1
합 계	10		42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립 종합운동장 건설본부 설치 조
 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전 상 찬 

1980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1456 호
 서울특별시립종합운동장건설
 본부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종합운동장 건설본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를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0.10.1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2 급 갑 류 또는 을 류	1	이사관, 시설기감,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기감 1
3 급 갑 류	3	행정 1, 공업 1, 건축 1
3 급 을 류	8	행정 3, 기계 1, 전기 1, 토목 1, 건축 2
4 급 갑 류	11	행정 5, 기계및전기 2, 토목및건축 4
4 급 을 류	10	행정 5, 기계및전기 2, 토목및건축 3
5 급 갑 류	11	행정 5, 기계및전기 2, 토목및건축 3, 간호직 1
5 급 을 류	3	기계및전기 2, 건축직 1
고 등 원	66	수위 8, 기계공 7, 전공 7, 운전원 3, 타자원 2, 매표원 6, 경비원 7, 수표원 6, 안내원 7, 전화교환 원 4, 목공 1, 잡부 7, 대장정리원 1
계	113	

규 칙

서울특별시 지방잡급직원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전 상 찬 

1980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870호

서울특별시지방잡급직원
규칙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잡급직원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가. 총괄'표 및
'나. 일반회계'표와 (별표2)중

(별표1)

가. 총괄

'가. 지방 잡급직원 직종별 조인' 표 및 '나. 기관별 정원'표 중
'(7) 종합 운동장 건설본부'의 정
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회 계 별		계	일 안 회 계	특 별 회 계
총	계	6,242	4,588	1,654
1	종	291	160	131
2	종	494	493	1
3	종	1,013	271	742
4	종	643	477	166
5	종	465	404	61
6	종	1,104	1,025	79
7	4 호	12	12	84
	5 호	82	82	
	6 호	255	171	
	7 호	206	206	
	8 호	178	178	
총	9 호	72	72	
	소 계	805	721	84
8	2 을 15 호	1	1	1
	2 을 5 호	4	4	
	3 을 15 호	9	8	
	3 을 10 호	29	24	
	3 을 5 호	65	40	
	4 갑 9 호	366	298	
총	4 갑 5 호	193	187	6

회 계 별		계		일반 회 계		특별 회 계					
종	별										
8	기	타	760	475		285					
	소	제	1,427	1,037		390					
나. 일반회계											
회 계 별	계	부채 (경찰 및 소방서 포함)	구	동	보사 관야 사업소				기 타		
					소계	병원	보건소	기 타			
계	4,588	1,205	763	417	1,207	460	597	150	996		
1	종	160	67	23		19	12		7	51	
2	중	493	396	32		8			8	57	
3	중	271	2	33		172	116	51	5	64	
4	중	477	176	155		36	19		17	110	
5	중	404	75	123		98	56		42	108	
6	중	1,025	154	325	417	84	8	69	8	45	
7	4 호	12	11			1	1				
	5 호	82	44			22	12		10	16	
	6 호	171	39			99	4	85	10	33	
	7 호	206	33	13		109		89	20	51	
	8 호	178	19			159		159			
종	9 호	72				72		72			
	소	제	721	146	13		462	17	405	40	100
8	2	을 15호	1							1	
	2	을 5호	4							3	
	3	을 15호	8							8	
	3	을 10호	24	10						14	
	3	을 5호	40	4			4		4	32	
	4	갑 9호	298	51	35		20	16		4	192
	4	갑 5호	187	2			19	4		15	166
	종	기	타	475	121	24		285	212	73	45
	소	제	1,037	189	59		328	232	73	23	461

(별표 2)		
가. 잠급직원 직종별 정원		
종 별	직 종 별 정 원	
1 종 (291)	제도사 (3), 통신기술사 (12), 전기기계공 (180), 기술교도사 (7), 비메오기사 (3), 기계정비공 (23), 소방기술원 (3), 보일러공 (27), 역청계량원 (2), 역청시험원 (1), 역청기사 (13), 약사보조 (8), 수도기계정비공 (7), 방송기술사 (2)	
2 종 (494)	속기사 (2), 운전원 (87), 시점안내원 (2), 관광안내원 (2), 교통순시원 (365), 운동지도원 (18), 마부 (7), 주차관리원 (1), 민방위훈련반장 (10)	
3 종 (1,013)	통제조사보조반장 (1), 구호협회감사보조 (1), 유수차기계공 (17), 유수지전공 (13), 새마을복지상담원 (3), 운동기구기술사 (9), 간호원 (156), 보조 (2), 사감 (2), 의료기사 (12), 검사원 (1), 수도조절수 (428), 수도정비공 (314), 유료도도매표원 (12), 조명보조 (4), 자동차정비보조원 (38)	
4 종 (643)	보조수 (309), 감시원 (37), 모니터요원 (4), 원예수 (116), 생원조사원 (96), 안내원 (25), 보안등수리공 (17), 교환수 (9), 타자수 (32), 약기관리보조수 (1), 승강기안내원 (2), 경수처분인부 (95)	
5 종 (465)	청사관리인부 (36), 관리인부 (20), 보조부 (107), 문화재관리인부 (1), 매표원 (17), 문고지도원 (29), 청소원 (83), 경비원 (170), 수로원 (17), 지하도전기관리인부 (35), 취사부 (25), 양곡단수원 (25)	
6 종 (1,104)	사환 (1,068), 전달부 (36)	
7 종	4 호 (12)	예비군대대장 (1), 업무분석관 (7), 기계처리관 (3), 불리기사 (1)
	5 호 (82)	수석가정상담원 (1), 수석부녀상담원 (1), 화생방요원 (21), 영양사 (7), 프로그래머 (2), 수의사 (2), 부랑야전문지도원 (9), 수석아동복지지도원 (1), 보파기사 (2), 파이프물결정비사 (1), 무대기계정비사 (1), 무대장치사 (1), 통신방송조정주임기사 (2)

종	별	직	종	별	정	원
7		통신기술사주임 (1), 소상방제조정주임기사 (1), 무대기계조정기사 (1), 자료연구관 (1), 전산처리관 (17), 기계처리사 (6), 특수교사 (4)				
	6 호	(255) 감사보조원 (5), 오퍼레이터 (3), 일반가정상담원 (8), 약사 (17) X-선사 (17), 임상병리사 (17), 성병전담간호원 (17), 가족계획전담지도원 (2), 결핵지도간호원 (2), 성병전담임상병리사 (17) 기술원 펄프장관리인 (1), 기술교도사 (7), 임상심리사 (2), 통신기술반장 (3), 위생처리기관조수 (16), 위생처리기사조수 (90), 전산처리사 (10), 기계처리사 (4), 천공관리자 (1), 전산전기기사 (1) 전산기계기사 (1), 산조기사 (1), 언어치료사 (1), 스크아보트조작원 (3), 조타수 (6), 공해측정장비 관리요원 (2), 유행기사 (1)				
	7 호	(206) 결핵관리요원 (34), 윤락여성선도지도원 (1), 항공사진사 (4), 구호협회간사 (1), 도시개발자료요원 (2), 일반수녀상담원 (20), 사육사 (6), 가족계획선임지도원 (15), 가족계획엔타지도원 (40), 아동복지지도원 (15), 역청기공반장 (5), 천공원 (22), 중기정비기능사보 (6), 자동차정비원 (35)				
	8 호	(178) 식품위생감시원 (8), 가족계획일반지도원 (160), 천공원 (10)				
	9 호	(72) 동결핵요원 (52), 가족계획동요원 (10), 가족계획행정요원 (10)				
8	2	울 15 호 파일프울견연주자 (1) (1)				
	2	울 5 호 시사면찬수석전문위원 (1), 공연기획관 (3) (4)				
	3	울 15 호 (무대기계, 조명, 유행, 영상조정) 주임기사 (4), 전기발전주임 (9) 기사 (3), 보일러냉동조정주임기사 (2)				
	3	울 10 호 항공사진사주임 (1), 전자시스템분석자 (2), 판독사주임 (5), 화성 (29) 방주임 (1), 위생처리기계기사주임 (15), 중기정비기사 (2), 영화제작감독 (1), 시점연구원 (2)				

품명	직종별정원
8 3월 5호 (65)	감독사(3) 위생처리기계기사(22) 자동기계운전원(5) 위생처리기 관수(1) 공해측정장비 관리 기술요원(5) 중기 정비사(4) 화학 기사(1) 도시가스기계주임(12) 자동차 정비 주임(3) 영화 및 VTR 편집요원(1) 위생처리전기기사(8)
4월 9호 (366)	화생방요원(27) 전기보안담당자(86) 동물훈련교관(1) 시사편 찬전문 위원(3) 통신 기술주임(7) 인력 감사 보조원(1) 보이러 주임(36) 항공 감독사(3) 냉동기 기사(2) 위험물 취급 주임 (3) 고압가스 관리기사(35) 전기주임(1) 중기정비기능사(6) 자 동차 정비사(5) 중기 운전원(145) 영사 조종기사(2) 해외자 료 조사원(1) 자료 분석 요원(2)
중 4월 5호 (193)	의료 기기 추리 기사(4) 중기 정비 기능사(10) 수도양수기 기계기사(1) 공해 측정 기사(21) 자동차 부정비사(43) 도 시 가스 기계공(56) 중기 조종사(55) 영사 기능사(3)
기 타 (760)	청원경찰(470) 의사(223) 전공의(62) 헬기조종사(3) 헬기 정비사(2)

기관명 : (7) 종합 운동장 건설 본부

종별	정원	직종
계	44	
1 종	4	제도사 1, 방송기술사 2, 전기기사공 1
2 종	17	운전원 2, 운동 지도원 15
3 종	1	운동 기구 기술사 1
4 종	1	보조수 1
5 종	1	청사 관리 인부 1
6 종	4	사환 3, 전달부 1
7 5 호	3	통신방송조정주임기사 1, 전산처리관 1, 기계처리 사 1
중 6 호	7	스코아보드 조작원 3, 전산처리사 1, 음향기사 1, 기계처리기사 1, 통신기술반장 1

종	번	정	원	지	종	
	7	호				
8	3	울	15	호	2	전기번전발전주입기사 1, 냉동조정주입기사 1
	3	울	10	호		
	3	울	5	호		
종	4	갑	9	호	3	위험물 취급주입 1, 보이라주입 1, 전기보안 담당자 1
	4	갑	5	호	1	공해측정기사 1

서울특별시 의 구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80년 8월 26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871 호

서울특별시 의 구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의 구사무분장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시민봉사실) ① 시민봉사실에 주민계, 민원처리계, 호적계 (종로구 및 중구는 호적전계계, 호적관리계 물 둔다) 로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

② 시민 봉사실 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계

- 가. 문서 및 편인 관수
 - 나. 민원 안내 및 민원 대필
 - 다. 주거표의 작성 및 관리
 - 라. 주거표의 호적 및 병적 대조 확인
 - 마. 주민 등록지와 의 통보
 - 바. 실내 다른 계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민원처리계
- 가. 구, 동 민원업무 개선, 통제, 조정 및 지도
 - 나. 민원상당
 - 다. 진정서의 접수 처리
 - 라. 민원서류의 접수 처리
 - 마. 외국인 등록
3. 호적계
- 가. 호적 신고 및 편제
 - 나. 호적 등초본 발급
 - 다. 실원 기타 지 증명
 - 라. 인구 동태에 관한 사항
 - 마. 호적 신고 사항의 주민등록지

통보

4. 호적관리제
 가. 호적 부속 관리
 나. 호적 신고 및 편제
 다. 호적 신고 사항 주민등록지 통보

라. 인구통계

5. 호적관리제
 가. 호적 등, 초본 발급
 나. 신원증명 기타 제 증명 발급
 다. 호적 민원상담, 대필
 라. 기타 호적 민원에 관한 사항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 (청소) ①청소과에 서무제, 작업제 처분장 관리제 (마포구에 한한다) 및 위생설비제를 두고 제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위생설비 제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전속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

②청소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제
 가. 오물수거 수수로 조정 및 징수
 나. 진개 및 분뇨 매각대 결성 징수
 다. 오물수거 수수로 조정에 대한 민원처리
 라.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마. 청소관계기계, 기구류의 개수 수선
 사. 과내 다른과의 수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작업제
 가. 진개, 분뇨 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
 나. 진개, 분뇨 수거운반처리
 다. 진개 분뇨 불법 처분 감시
 라. 진개 분뇨 취급업 허가
 마. 청소 인부 임용

3. 처분장 관리제
 가. 난지도내 시유 재산관리
 나. 처리장 관리 및 복토
 다. 쓰레기 처리장 및 청소차량 소독

4. 위생설비제
 가.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나. 정화조의 유지 관리
 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청소관리
 라. 공중변소 유지관리
 마. 변소개량
 바. 생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정화조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 제 1 호중 라목을 사목으로 하고 라목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며 제 3 호 다음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관리과에 관리 제 1 직, 관리

제 2제, 가로정비계 및 도로계 (중
구에 한한다)를 두고, 계장은 지
방행정주사로 보한다.

- 라. 유로도로 관리 및 운영
- 마. 유로도로 종사원 근무 감독
- 바. 유로도로의 수입금 수납

4. 유로 도로계

- 가. 유로도로 관리 및 운영
- 나. 유로도로 종사원 근무 감독
- 다. 유로도로의 수입금 수납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 종합운동장 건설본부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칙 ㉞

1980년 8월 26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872 호

서울특별시립 종합운동장 건설본부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 종합운동장 사무 분
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2조 제 2항 제 1호 사무 및 아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실내 체육관 및 수영장의 사
용허가

아. 실내 체육관 및 수영장의 부
속 시설 (식당, 점포, 매점, 기타
후생 시설)의 운영 관리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9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26 호 ('78
, 10. 6)로 시설결정 및 동 고
시 제 221 호 ('80. 6. 18)로
지적 승인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고 제 66 호 ('80.
7, 10)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공람 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 12. 10)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고시한다.

2. 원제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대치동 569
외 15필지일대 (대곡국민학교)

2.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 계획인가

3. 사업의 규모 : 13,22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시행인가후 15
일 이내
나) 준공 예정일 : 착공일부터 2년
이내

6.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
적소유자의 권리경세 (다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
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다음)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
소, 성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강남구 대치동	569	답	754	강남구일일동137	이병우	
	570	"	2,440	안양동 424	김서인	
	571	전	817	해화동 15-51	김재준	
	572	"	338	"	"	
	573	"	1,161	구로동 390-144	장태수	
	574	"	1,065	계기동 904	최석권	
	575	답	1,058	역삼동 650-4	민병천	
				논현동산28-20	목영동	
	576	"	813	황학동 582	조정희	
	577	"	146	임천동 137	이규복	
	578	"	153	아현동 61-26	장미숙	
	579	"	125	신당동 37-92	강성천	
	553	"	813 2/3중 640	역삼동 650-4	민병천	
				논현동산28-20	목영동	

33-20 제 795 호

시

보

80.8.26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 제인의주소, 성명
				주소	성명	
	554	답	1,961 평중 640 평	계기동 579	이재근	
	563	전	745 평 640 평	염창동 539-3	최연희	
	564	·	2,234 평 640 평	구의동 55-22	김용주	
	456	도로	1,795	계기동 904	최석원	
계	16 필지		13,225	해화동 15-51	김재준	
				서울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00호
담수어판매장소지정

수산자원 보호령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수어
판매장소를 지정 하였기 어획불 양

특지역 및 판매장소 지정등에 관한
사무 취급요령 제 7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1980.8.22

서울특별시장

지정 번호	판매장소			취급품구
	주소	사업주체	사업장명	
01	당초: 서울특별시문대문구 신선동 114 외 27 변경: 서울특별시중구충림 동 26 외 3	사단법인내수면 개발진흥협회	서울특별시지정 담수어판매장	담수어 (판상어포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3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울 도시계획법 제 1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 . 12 . 10) 의
관한 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 되었기 이를 고시 한
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8.25
서울특별시

0. 실효구간

구분	종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실효	중로	0	170	15m	260m	답십대 3-11	중1-179	
"	소로	1		10m	140m	김포지구 523 빌당 238	김포지구 523 빌당 257	
"	"	"		10m	700m	전농동대 3-43	전농동대 3-43	
"	"	2		8m	40m	원효로 1가 23	원효로 1가 23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02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289 호(80.8.11)로 변경결정(면적정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8.25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지적승인조사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건	양평중학교	영등포구양평동 3가 91번지	10,479㎡ (3,170명)	
변경	"	"	8,962㎡ (2,711.1명)	면적정정 (도면동일)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4 호

최고기, 돼지고기 연동가격
및 돼지고기 기준 연동표 고시

농수산부 훈령 제 453 호 육류 연
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 제 10 조
1 항에 의거 최고기, 돼지고기 연동
가격 및 돼지고기 기준 연동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0.8.26
서울특별시 시장 정상권

1. 최고기 연동가격: 600 그람당 3,200 원
2. 돼지고기 연동가격: 600 그람당
(박피) 1,400 원
3. 돼지고기 기준 연동표 (박피)

지육가격 (kg당)	연동가격 (600g당)	지육가격 (kg당)	연동가격 (600g당)	지육가격 (kg당)	연동가격 (600g당)
1,100	1,050	1,450	1,300	1,800	1,600
1,150	1,100	1,500	1,350	1,850	1,650
1,200	1,100	1,550	1,400	1,900	1,700
1,250	1,150	1,600	1,450	1,950	1,750
1,300	1,200	1,650	1,500	2,000	1,800
1,350	1,250	1,700	1,550		
1,400	1,300	1,750	1,550		

4. 시행일자: 1980.8.26.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5 호

비료생산업 허가

비료관리법 제 11 조 및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료생산업 허가를
하였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1980.8.27
서울특별시 시장

1. 허가번호: 제 1-3 호
2. 상 호: 서울미원주식회사
3.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33-10
4. 대표자성명: 김 중 의
5. 제조장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9

<p>6. 비료의종류: 제 3 중복합비료</p> <p>7. 보충성분중 유효성분량 0. 질소전량 6% 0. 인산전량 5% 0. 가리전량 1% 제 12%</p> <p>8. 보충성분량중 유해성분 최대량 0. 질소, 인산, 가리, 각각의 최대 성분량의 합계량의 함유율 1%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25% 비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셀파민산 0.005%</p> <p>9. 기타규격: 0. 유리황산 0.5%이하 0. 더시안지아미트태질소 1%이하</p> <p>조건 수출동에 한하여 생산할 것이며, 내수판내는 일체 금함.</p> <p>○ 서울특별시고시제 30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325 호 (79.7.20) 바) 수용도는 사용할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p>	<p>및 동고시제 302 호 (면적정정 80.8.25)로 학교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에 대하여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의 권한위임 규정 및 도시계획법 제 24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0.8.27 서울특별시강</p> <p>가) 사업시행지: 영등포구양평동 3가 91번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양평중학교 다) 사업시행면적: 8,962.3㎡ (2,711.1명)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마) 사업기간: 착수년월일: 1980. 준공년월일: 착공일로부터 1년</p>												
<table border="1"> <thead> <tr> <th>학교명</th> <th>소재지</th> <th>지목</th> <th>지적</th> <th>소유자</th> <th>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th> </tr> </thead> <tbody> <tr> <td>양평중학교</td> <td>영등포구양평동 3가 91번지</td> <td>대</td> <td>8,962.3㎡ (2,711.1명)</td> <td>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td> <td>없음</td> </tr> </tbody> </table>	학교명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양평중학교	영등포구양평동 3가 91번지	대	8,962.3㎡ (2,711.1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없음	
학교명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양평중학교	영등포구양평동 3가 91번지	대	8,962.3㎡ (2,711.1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없음								
<p>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 규정에 의</p>	<p>한 관계인주소 성명(상동) 아) 공사설계도면: 별첨(도면생략)</p>												

○ 서울특별시고시제 307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제 2948호(66.2.17)에 의한 시설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 120호(73.7.16)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하고 있음

1980. 8. .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1. 사업시행의위치 : 영등포구대림 2동
시점 : 영등포구대림 2동 1062번지앞
종점 : 영등포구대림 2동 1050번지앞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구로 2 교~
신길광장간 도로신설공사
3. 사업의규모 : 폭 25미터,
연장 170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6.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
가일~80.12.31

6. 사용또는수용할재산의소재지: (다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다음)

인 가 중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중

1. 사업시행지 : 영등포구대림 2동
시 점 : 영등포구대림 2동
1052번지앞
종 점 : 영등포구대림 2동
1050번지앞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구로 2 교~
신길광장간 도로신설공사
3. 사업의규모 : 폭 25미터 연장 170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80.12.31
6.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제 307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
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서류 참조
위와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
획법 제 25조 및 동시행령 제 27 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80. 8. .

서울특별시장

(인 가 조 건)

1. 사업 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개략설계도서(평면도)에 의하여 시공 설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동명	지번			주소	성명
1	대림동	1053-10	건	341 평	노량진동 128-1	박정득
2		1051-82	대	390 평	대림동 1051-9	김근수
3		1051-81	답	88	화성군장안면수촌리 69-7	장동산
4		1051-10	·	291	필동1가 3-6	김경진
5		1051-11	대	127	대림동 1055	김본애
6		1051-12	·	129	홍재 104-6	이금훈
7		1050-6	·	116	신길동 147	이양봉
8		1050-15	·	129	대림 934-36	유증순
9		1050-4	·	82	대림동 1061	박도규
10		1050-35	답	74	화성군장안면수촌리 69-7	장동산
11		1050-34	대	159	아현동 613-10	민영숙
12		1050-31	답	394	필동1가 3-5	김대환
13		1050-33	대	164	대림동 1050-10	장인철
14		1050-17	답	893	중구필동3가 39-13	이기홍
계	14필지			1,259평		

◎서울특별시고시제 30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 64 호 (78.3.29)
내 의한 시설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 156 호 (78.4.15) 및 서울시

고시 제 1 호 (80.1.4) 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시행령 제 27 조에 의
거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
람에 공하고 있음.

1980. 8. .

서 울 특 별 시 장

— 다 음 —

1. 사업시행의 위치 : 구로구 개봉1 동
경인국도

시점 : 구로구 개봉1 동 252-14 앞
중점 : " 80-21 앞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경인국도
확장공사 (4 차)

3. 사업의 규모 : 폭 15 미터를 35
미터로 확장, 연장 55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80.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
지 : 다음 토지, 건물조서 참조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인 가 증

도시계획 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증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개봉1 동 경
인국도

시점 : 구로구 개봉1 동 252-14 앞
중점 : " 80-21 앞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경인국도
확장공사 (4 차)

3. 사업의 규모 : 폭 15 미터를 35
미터로 확장 연장 55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
획인가일 - '80.12.31

6.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서류 참조.
위와 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시행령
제 27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별첨 철재도서
와 같이 인가함.

1980. 8. .

서 울 특 별 시 장

(인 가 조 건)

1.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개략설제도서 (평면도) 에
의하여 시공설제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 지 조 서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동명	지번			주소	성명
1	개봉동	156-19	내	86	개봉동 156-1	황무성
2	"	-23	"	36	"	"
3	"	142-36	"	47	개봉동 142-21	김승은
4	"	139-210	"	48	성동구성수동 2가 331-77	구영길
5	"	-209	"	41	개봉동 139-20	이귀영
6	"	-203	"	21	"	"
7	"	-208	"	42	오류동 45	유대중
8	"	-207	"	15	개봉동 139-14	조철이
9	"	-206	"	42	청파동 2가 47-36	황승욱
10	"	80-31	"	10	개봉동 80-22	장석태
11	"	81-7	"	16	" 81-5	광희유조(주)
12	"	144-9	"	12	개봉동 155	황수운
13	"	-8	"	49	"	"
14	"	-11	"	260	"	"
15	"	산21-6	임	156	내발산동 483	박영화

건 물 조 서							
순번	소재지		구조	용도	수용면적	소유자	
	동명	지번				주소	성명
1	개봉동	156-5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영업용	2.16평	개봉동 156-1	황무성
2	"	146-5	"	영업용사무실	2.16	개봉동 146-5	이성우
					6.48		
3	"	139-13	세멘부력, 스페트럼	사무실, 창고	4.79	성수동 2가 331-77	구영길
					9.58		
4	"	139-20	연와조, 평옥개	주택, 점포	3.72	개봉동 139-20	이귀영
					10.88		
			세멘부력, 평옥개	창고	0.79		

순 번	소재지		구조	용도	수용 면적	소유자	
	동번	지번				주소	성명
5	개봉동	139-116	세멘트벽돌, 명옥개	사무실, 점포	11.67	오류동 45	유대중
					13.04		
					13.04		
					0.11		
					4.1		
39.23							
6	"	161-25	세멘트벽돌, 스테트	주택및 창고	4.62	개봉동 161-25	이시우
7	"	161-18	세멘트벽돌, 세와, 스테트	주택및 점포	3.81	" 161-18	장연홍

◎서울특별시고시제 30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 2호선
일부역간 영업거리표
중역명 일부개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181 호 지하철
2호선 강남구간 일부건설(구청앞역
~대운동장역) 구간외 역간 영업거
리(☐) 고시중 다음과 같이 역명칭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

1980. 8. 28

서울특별시장

지하철 2호선역간영업거리표

현행역명	변경역명
구청앞역	신설동역
대운동장역	종합운동장역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64 호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일부변경및환지계획변경
공 략 공 고

1.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
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선수촌
부지확보등 일부 변경계획을 수립
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4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일부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을
위하여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14 일간 공람에 공한다.

<p>2. 계획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봉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0.8.19</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p style="text-align: center;">계획변경내역</p> <p>가. 사업명 :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46,553 평 다. 변경위치 : 강동구잠실동 682 외 315필 라. 변경내용 : 사업계획 일부변경 및</p>	<p>환지계획변경 (도서는 생략)</p> <p>◎ 서울특별시 공고제 266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공고</p> <p>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8.2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	---

업 제 명	소 계 지	내 표 자	허 가 번 호	제 조 구 분	취 소 사 유
국제전자	영등포구양평동 3가 67	김 봉 진	1-7-6	전열기구류 제조사업	전기용품안전관리 법제 7 조 위반
삼흥전기 제 락 소	영등포구양평동 5가 26-5	송 태 선	1-6-8 1-8-33	교류전동기 제조사업 전동력용용 기계기구류 제조사업	· ·
한우전기 상 사	영등포구당산동 3가 470	정 연 학	1-10-3	광원용용기 제기구류제 조사업	·

<p>◎ 서울특별시 공고제 26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지정취소</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 1 항 규정에 의거 특정열사용기 자재</p>	<p>시공업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28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8.</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	---

다						
지정번호	업 제 명	대표자	소재지	지 정 품 목	위반내용	처 용 법 규
마/10	공영설비	이희승	마포구 서교동 465/2	1) 옥용강제보 일러 2) 주철제보 러 3) 압력용기 4) 온수보일러 (30만 Kcal 이상)	무 단 폐 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2조 1항 위반 동법제 30조 1항 4호 적용
<p>◎ 서울특별시 공고제 269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p> <p>1. 건설부 고시제 426 호(78.12.29) 로 고시된 금호대교 건설공사 구간내에 저촉된입되는 토지의 도 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함.</p> <p>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로시설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공고장소: 서울시청 나. 공고기간: 1980.9.1-9, 15 1980.8.26 서울특별시 장</p>				<p>공 랫 개 요</p> <p>1. 사업장위치: 성동구옥수동 168 의 1 - 강남구압구정동 331</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금호대교 건설공사</p> <p>3. 사업의규모: B = 35 미터, L = 1,095 미터</p> <p>4.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 장</p> <p>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 사업인 가일 - 83.12.31</p> <p>6. 사업 또는 수용할토지: 해당없음.</p> <p>7.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해당없음.</p> <p>◎ 서울특별시 공고제 271 호</p> <p>열사용기자제제조업체행정처분</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3 조 4 항의</p>		

규정에 의거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0.8.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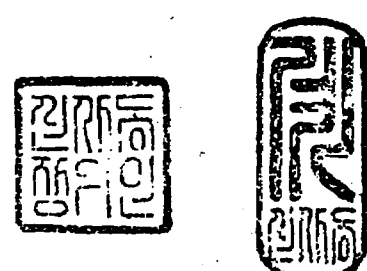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품목	위반사항	처분내용	적용법조
118	명화보일러제작소	송재수	고척동 17-12	구명탄은수보일러(강판)	구명탄용은수보일러형식승인상이제작 (1-1004-901)	생산중지 80.8.30 -11.30 (3개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3조 및 24조

◎ 서울특별시 공고제 274 호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역지정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제 138 호(80.5.2) 로 환지계획 공람공고한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역 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와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역 정지를 변경 지정하였지 공고한다.
 2. 환지계획정지 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사에게는 개별통지한다.
 1980.8.27
 서울특별시장

환지역정지변경지정내역

사업명	변경면적	변경위치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6,970.1평	신천동 1-155 외 13필

◎ 서울특별시 공고제 275 호
 청계천 7 가구역제 7, 8 지구 재개발사업 완료공고
 제 7, 8 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8.28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86 호(78.3.9) 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청계천 7 가구역

<p>1. 사업시행지 : 중구신당동 213-20 일대</p> <p>2. 사업명칭 : 청계천 7가구역 제 7, 8 지구 재개발사업</p> <p>3. 사업시행인가년월일및번호 : 1978. 3.9 (서울특별시고시제 86호)</p> <p>4. 시행자 주소, 성명 가.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3-20 번지 나. 성명 : 청계천 7가 제 7, 8 지구 재개발조합장 허용구</p> <p>5. 준공면적 가. 토지 : 대 지 2,938.7㎡ 도로(공공용지) 581.7㎡ 계 3,520.4㎡ 나. 건물 : 연 면 적 8,601.11㎡</p> <p>6. 준공내역 : 준공내역조서 및 확정 추량성과도 참조 (서울특별시 재개발1과</p>	<p>비치)</p> <p>◎ 강남구 공고제 281 호</p> <p>공인 개 각 사 용 공 고</p> <p>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규 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질적인 및 제인용 개각사용 승인하였기 동 조 례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1980.8.23</p> <p>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p> <p>1. 개각공인사용개시일 : 80.8.23 09:00</p> <p>2. 공인개각동 : 신사동</p> <p>3. 공인인영 : 다 음</p>	
<p>공 인 외 인 영</p>		
<p>인 영</p>		
<p>공인명</p>	<p>신사동장적인및제인 (개각인영)</p>	<p>신사동장적인및제인 (폐각인영)</p>

강동구청 공고 제 36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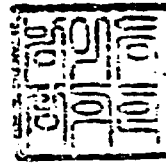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계 제 6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이동장 공인을 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계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

1980 . .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공인개각사용계시일자: 80. . .
- 2. 개각될 공인명
방이동장의 직인 및 명일동장직인
- 3. 공인개각인명: 다 음

인
영



공
인
명

방이동장직인

명일동장직인